

인천지방법원 2024. 11. 26 선고 2022가합5153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1. A

2. B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피고들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오영은1)

변론 종결2024. 10. 29.

판결 선고2024. 11. 26.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C 사이에 2021. 2.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A은 C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1. 2. 19. 접수 제626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C 사이에 2021. 2.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C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1. 2. 19. 접수 제626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되어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한 건강보험 업무를 관리·운영하는 비영리 특수공법인이고, C은 성남시 중원구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자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인 'D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던 사람이며, 피고들은 C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 등

1)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9. 1.경 이 사건 요양병원에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요양병원이 2015. 12. 1.부터 2018. 11. 30.까지 사이에 총 36개월간 보건복지부 고시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음을 확인하였다.

2) 원고는 C에 대하여, 2021. 5. 26.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같은 해 6. 10.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2)에 근거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887,407,710원의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C은 2021. 8.경 원고와 위 부당이득금 887,407,710원 중 전산상계 처리하고 남은 784,071,020원을 같은 달 30.부터 36개월에 걸쳐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1회분인 21,115,660원만 변제하였고, 세액공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738,934,0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다. C의 피고들에 대한 부동산 증여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21. 2. 19.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21. 2. 16.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21. 2. 16.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증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라. C의 원고에 대한 행정소송 경과

C은 2021. 7. 2. 원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7350, 69882(병합)호로 '이 사건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3. 7. 20. C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C은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23누53647, 53654(병합)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3. 12. 15. C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C이 다시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24두30380, 30397(병합)호로 상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4. 4. 25. C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한 이 사건 환수처분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자인데, C이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C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체결된 2021. 2. 16.의 이후 시점에 이 사건 환수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환수처분이 내려진 시점에야 비로소 발생한 원고의 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C은 2015. 12. 1.부터 2018. 11. 30.까지 사이에 이 사건 환수처분의 원인이 된 의료급여비용 부담 청구를 하였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9. 1.경 이 사건 요양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위 부담 청구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이 사건 환수처분이 이루어지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원고가 C에 대하여 이 사건 환수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에서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는 것, 즉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이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C의 재산상태3) 가 채무초과 상태4) 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그리고 이 사건 환수처분의 원인이 된 C의 의료급여비용 부담 청구의 내용,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 사건 요양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시점과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및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인 C로서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통해 자신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들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그러므로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과 C 사이에 2021. 2. 26. 체결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A은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1. 2. 19. 접수 제626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C 사이에 2021. 2. 26. 체결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은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1. 2. 19. 접수 제626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민석

판사김정운

판사나경식

별지

1) 피고들의 소송복대리인은 변론종결 후인 2024. 10. 30. 소송복대리인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2)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3) ① 적극재산 1,698,828,701원(= 별지 목록 제1부동산 가액 1,092,126,500원 + 별지 목록

제2부동산 가액 565,632,600원 + 강원도 평창군 소재 토지 가액 40,825,000원 + 경기도 광명시
소재 토지 가액 244,601원), ② 소극재산 887,407,710원(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

4) ① 적극재산 38,942,078원(= 강원도 평창군 소재 토지 가액 38,695,000원 + 경기도 광명시
소재 토지 가액 247,078원), ② 소극재산 738,934,000원(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